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상 이 기 장 령 시 행 규 칙
전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종섭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상이기장령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군인 등에 대한 상이기장 제도가 있으나, 수여대상의 기준 모호, 신청 절차의 현실성 미흡 등으로 인해 해당 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상태이므로, 기장의 명칭 변경을 포함한 법규 정비를 통해 부상자를 예우하고자 하는 기장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법령명을 「상이기장령 시행규칙」에서 「헌신영예기장령 시행규칙」으로 개정

나. 기장 수여대상자의 범위를 유관 법률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따른 심사 또는 심의를 거쳐 전상 또는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개정(제2조)

- 1) 「군인사법」 제54조의3 및 제54조의4에 따른 전공사상심사
- 2) 「공무원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 3) 기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 등 전상 또는 공무상 부상 여부에 대해 인정 가능한 심사 또는 심의

다. 기장 신청주체를 현행 ‘군 의료기관의 장’에서 ‘소속 장성급 부대장’을 추가하여 확대(제3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상이기장령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상이기장령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상이기장령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헌신영예기장령 시행규칙

제1조(헌신영예기장의 수여 대상) 헌신영예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은 「헌신영예기장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2조(기장 수여대상자의 선정 범위) 기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따른 심사 또는 심의를 거쳐 전상 또는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군인사법」 제54조의3 및 제54조의4 에 따른 전공사상심사
2. 「공무원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3. 기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 등 전상 또는 공무상 부상 여부에 대해 인정 가능한 심사 또는 심의

제3조(기장 신청절차) ① 영 제4조 본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수여하는 기장 대상자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소속 장성급 부대장 또는 군

의료기관의 장이 영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정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대상자의 소속 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서식에 따른 헌신영예기장 수여신청서

2. 「군인사법」 제54조의3 및 제54조의4 에 따른 전공사상심사 관련 서류

3. 제2호의 서류가 없는 사람은 신청 당시 군 의료기관 또는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의료기관의 진단서

② 영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선정한 후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기장 및 수여증서의 발급) ①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기장과 함께 수여증서를 신청인을 거쳐 본인에게 발급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수여 상황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상이기장령 시행규칙	헌신영예기장령 시행규칙
제1조(상이기장의 수여 대상) 상이기장 (상이기장)은 군인, 사관후보생, 경찰관, 군무원 그 밖에 전투 또는 작전에 협조한 사람으로서 「상이기장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2조(특별상이기장 대상자의 범위) 영 제2조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상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한쪽 눈의 시력이 명암을 식별하지 못하는 사람 2. 음식물을 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을 잃거나 그 기능에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기도(기도)의 기능에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얼굴이 매우 추한 모습으로 변형된 사람 ~~ 이하 생략 ~~ 제3조(보통상이기장 대상자의 범위) 영 제3조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상이자"란 상이자 중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1조(헌신영예기장의 수여 대상) 헌신영예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은 「헌신영예기장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2조(기장 수여대상자의 선정 범위) 기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따른 심사 또는 심의를 거쳐 전상 또는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군인사법」 제54조의3 및 제54조의4에 따른 전공사상심사 2. 「공무원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3. 기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 등 전상 또는 공무상 부상 여부에 대해 인정 가능한 심사 또는 심의 〈삭제〉

현행	개정안
제4조(상이기장 신청절차) ① 영 제5조 본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수여하는 상이기장 대상자에 대해서는 군 의료기관의 장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상이자의 소속 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서식에 따른 상이기장 수여 신청서 2. 상이가 전투 또는 작전상의 공무(공무)로 인한 것임을 목격한 사람 또는 소속 장의 증명서 3. 신청 당시 군 의료기관 또는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의료기관의 진단서 ② 영 제5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선정한 후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상이기장 및 수여증서의 발급) ①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해당 상이기장과 함께 수여증서를 신청인을 거쳐 본인에게 발급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수여 상황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기장 신청절차) ① 영 제4조 본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수여하는 기장 대상자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소속 장성급 부대장 또는 군 의료기관의 장이 영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대상자의 소속 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서식에 따른 헌신예기장 수여신청서 2. 「군인사법」 제54조의3 및 제54조의4에 따른 전공사상심사 관련 서류 3. 제2호의 서류가 없는 사람은 신청 당시 군 의료기관 또는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의료기관의 진단서 ② 영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선정한 후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기장 및 수여증서의 발급) ①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기장과 함께 수여증서를 신청인을 거쳐 본인에게 발급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수여 상황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병영정책과	
연 락 처	(02) 748 - 5154